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·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295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○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금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조례 제2조의2)
 - '2025년 12월 31일'에서 '2027년 12월 31일'로 연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[별첨 7]
 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[별첨 2])
- 다. 협의: 감사관, 예산담당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협의 완료
- 라. 기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[별첨 1]
 - 2) 입법예고(2024. 8. 8. ~ 2024. 8. 29.) 결과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[별첨 3]
 - 3) 교육규제심사: 해당없음

- 4) 부패영향평가: [별첨 4]
- 5) 성별영향평가: [별첨 5]
- 6) 학생인권영향평가: [별첨 6]

【별첨 1】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	2027년 12월 31일
일까지로 한다	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해당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-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
- 3. 미첨부 사유
 - 기금 존속기한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
- 4. 작성자
 - 청사이전추진단(청사이전기획팀) 행정6급 김종훈(T: 2282-8502)

【별첨 3】

[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제14조 <u>별지 제5호서식]</u>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	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			
의견제출자					

【별첨 4】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평 가 담 당	감사관	장학사	황은영	
입안주관부서	청사이전추진단	통보일	2024. 7. 22.	
관련 조문	검토 결과	조치사항		
안 전체	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는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함 - 동 개정(안)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,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고려 하여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 제3항 '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'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		"원안동의"	

【별첨 5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		
관리번호	2024A서울교육016		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	
소관부서	부서명	청사이전추진단				
	담당자명	김종훈	전화번호	02-2282-8502	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	
담당부서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		
	담당자명	여인진	전화번호	02-399-9546		
체크리스트	2024년 7월 18일					
제출일자						
완료(제외)	2024년 7월 18일					
통보일자			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7월 18일

【별첨 6】

자치법규 · 학생인권영향평가 요청에 따른 회신

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핵신미래교육



서울특별시교육청



수신 청사이전추진단장

(경유)

제목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요청에 따른 회신(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 금 설치 운용 조례)

- 1. 관련:
 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-3689(2024.7.4.)호.[서울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 통지] 나. 청사이전추진단-3093(2024.7.18.)호.[학생인권영향평가 요청]
- 2. 『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』공포(2024.7.4, 서울시의회)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(2024.7.4. 폐지)』제43조2항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요청법규: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.

끝.

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

★주무관 이승열 확생인권교육센 학생인권공호관 무필호 민주시민생활교 원과장 당나무관 학생인권공호관 무필호 원과장 22. 감삼구

협조자

시행 민주시민생활교육과-15849 (2024. 7. 22.) 접수 교육행정국 청사이전추진 (2024. 7. 22.)

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, 서울특별시교육청 (신문로2 / http://www.sen.go.kr 가, 서울특별시교육청)

전화 02-399-9086 /전송 /winside@sen.go.kr /비공개(5)

【별첨 7】

관련법규

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[시행 2024. 3. 2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107호, 2024. 3. 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3.20.>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개정 2024.3.20.>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0.12.31.]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(이하 "교육비특별회계"라 한다)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
- 2.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<개정 2016.12.29.>
- 3. 기금의 운용수익금
- 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- 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- 2. 설계비 및 감리비
- 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4.3.20.>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
- 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- 3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 <개정 2023.1.12.> 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3.1.12.>

- 2.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, 교육행정국장, 총무과장, 예산담당관,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1.12., 2023.10.5.>
- 3. 민간위원은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.1.12.>
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<신설 2023.1.12.>
- 나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<신설 2023.1.12.>
- 다.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<신설 2023.1.12.>
- 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신설 2023.1.12.>
-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.
- 1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.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23.10.5.>

제7조(심의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-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.

- 1.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
-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.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

- 1. 기금운용관 : 교육행정국장
- 2. 기금출납원 :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<개정 2023.10.5.>
-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)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<제6255호,2016.7.7.>펼침 부 칙 <제6255호,2016.7.7.> 부칙<제6255호,2016.7.7.>보기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<제6362호,2016.12.29.>펼침 부 칙 <제6362호,2016.12.29.> 부칙<제6362호,2016.12.29.>보기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제1호 "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"을 "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"으로 한다.

부칙<제7768호, 2020.12.31.> 부 칙 <제7768호, 2020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8452호, 2022.10.13.> 부 칙 <제8452호, 2022.10.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8593호,2023.1.12.>펼침 부 칙 <제8593호,2023.1.12.> 부칙<제8593호,2023.1.12.> 보기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칙<제8873호,2023.10.5.>(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) 부칙 <제8873호,2023.10.5.>(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9107호,2024.3.20.> 부 칙 <제9107호,2024.3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